<별지 제1호 서식><개정2016.9.1.>

규 정 입 안 서

1. 법 규 명 칭 : 비행교육원 생활관 운영 지침

2. 제정(개정)이유 : 현 지침과 실제 운영상의 차이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가. 조종장학생 준비하는 학생들이 최종 탈락시 군휴학을 예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생활관비 환불로 인하여 생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생활관 입사 기준을 강화할 필요
   나. 현 생활관이 위치한 지역은 도시가스 보단 LPG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공과금을 본교에서 부담할 시 생활관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그런 건물은 실내공간의 협소로 입사생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생활관 지정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함임.
   다. 3인 1실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현지 여건상 2인 1실, 4인 1실 등 호실 수용인원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 동일한 생활관비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라. 퇴사로 인한 환불은 신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제도 고려하여야 함.

3. 주 요 골 자 :
   가. 제5조 (입사생 선발 기준 등)
      ③ 항 신설 : 입과 이후 군휴학을 할 자는 입사를 할 수 없다.
      ④ 제3항을 위반한 입사자는 재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나. 제9조(생활관비) 제2항 : 생활관 공과금 부담 주최 변경
      - 전기, 수도등 호실당 발생되는 공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다. 제10조(입사) 제4항 : 호실 배정인원에 따른 생활관비 구분 부과
      - 생활관 인원 배정은 3인 1실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현지 여건상 3인이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2인 1실 또는 1인실을 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생활관비는 3인 1실과 구분하여 부과한다.

   라. 제11조 (퇴사 및 중도 퇴사) 제4항 : 환불 조건 변경
      - 생활관부 납부 후 질병 등으로 비행교육이 불가로 중도 퇴사할 경우 ~

4. 참 고 사 항 :

첨 부 : 1. 규정 개정안 1부
2. 개정의 경우는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비행교육원 생활관 운영 지침 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중원대학교 비행교육원 입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등 기본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하여 무안 국제공항 근거리 내에 비행교육원 관리 생활관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복리후생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비행교육원 관리 생활관 운영에 적용한다.

제2조 (책임과 권한)
① 환경 경영 대리인(비행교육원 생활관 관리자)
환경 경영 대리인은 생활관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상태를 점검 및 확인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비행교육원장은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② (비행교육원 생활관 관리자 선정)
비행교육원 생활관 관리자는 비행교육원 교직원 중 선정하여 학생 상담 및 지도를 한다.
③ 비행교육원 생활관 (생활관 학생)
비행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생활관을 청결하게 유지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사고나 문제발생 시 신속히 비행교육원 생활관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조치할 의무가 있다.

제3조(지침 이외의 사항)
①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원대학교 생활관 규정 및 생활관 운영위원회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비행교육원 생활관의 업무담당자는 학생자치위원회를 두어 운영 및 개선점을 협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2장 생활관 운영 관리

제4조(생활관 운영)
① 비행교육원 운영 생활관에서는 중원대학교 생활관 규정 조항을 준하여 당해 학교 수준의 ‘비행교육원 생활관 운영 지침’ 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중원대학교 생활관 운영 규정에 준하여 비행교육원 운영 생활관 운영지침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위치나 지역적 특성, 외부 생활관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제5조(입사생 선발 기준 등)
① 입사생은 비행교육원의 입교하는 학생들의 우선 선발 한다.
② 단, 중원대학교 비행교육원 생활관을 원하지 않은 경우 개별 주거지 선택은 가능하다.

③ 비행교육원 입과 후 학기중 군휴학 예정자는 입사할 수 없다. <신설>
④ 제3항을 위반한 입사자는 재입사를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제6조(시설관리 등)
① 비행교육원장은 생활관 안전 및 화재관리에 대한 안전의식 및 대처능력 제고를 위하여 생활안전 교육 및 사고 부주의에 의한 경각심을 주어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② 개인 부주의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입사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7조(외부인의 제한)
관생은 비행교육원에서 허가 없이 외부인 및 비입사생을 생활관 내 대동할 수 없으며 임의적으로 숙박을 시킬 수 없다.

제8조(관생 의무사항)
1. 관생은 관생수칙과 공중도덕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관생은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관생은 실내에서 절대 정숙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 3 장 납부금

제9조(생활관비)
① 입주할 주거지의 주택 임대 계약은 중원대학교 본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며 한학기 관리비 및 방학기간 관리비를 합하여 입주하는 학생에게 생활관 관리비 납부고지서 발급 후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는 원칙으로 한다.
② 전기, 수도등 호실당 발생되는 공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③ 생활관비는 시세 및 주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생활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여 책정한다.
④ 생활관비 장학혜택 감면에 관한 사항은 중원대학교 생활관 감면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제 4 장 제 도

제10조(입사)
① 생활관 운영 지침에 의거 입사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입사허가 여부는 비행교육원장이 결정한다.
② 소정의 기간 내에 생활관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사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생활관 입사자는 개인 침구류 및 소지품을 사용하며 임대한 방에 배치된 가전 제품 및 비품등을 사용하면서 파손할 경우 파손 된 물품에 대해서 원상 복귀할
의무가 있다.
④ 생활관 인원 배정은 3인 1실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현지 여건상 3인이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2인 1실 또는 1인실을 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생활관비는 3인 1실과 구분하여 부과한다. <개정>

제11조(퇴사 및 중도 퇴사)
① 타 관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나 문란한 행동을 했을 경우 퇴사조치 할 수 있다.
② 강제 퇴사 조치된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3개월간 입사할 수 없다.
③ 정해진 기간 내 입실 기간이 종료 후 비행교육원 생활관 담당자에게 퇴사 사유와 일정을 통보하여 입·퇴사 관리 업무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생활관부 납부 후 질병 등으로 비행교육이 불가로 중도 퇴사할 경우 입사기간 중 3분에 2시점 기준 이하 시 일일 계산하여 환불 조치하며 3분에 2시점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 하다. <개정>
⑤ 중도 퇴사로 입주 학생이 부재 발생 시 호실 인원을 재조정 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2017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8년 8월 일부터 시행한다.

[비행교육원 비행실습비 내규] 신구조문대비표

입안 부서	제정(개정) 이유	현 행	개 정 안	비고
비행교육원	군 조종장학생 최종 탈락시 군입대로 퇴사시 환불사태 발생 미연 방지	제5조 (입사생 선발 기준 등)	제5조 (입사생 선발 기준 등) (신설) ③ 비행교육원 입과 후 학기중 군휴학 예정자는 입사할 수 없다. ④ 제3항을 위반한 입사자는 재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현 생활관 건물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LPG를 사용하는 건물을 생활관으로 사용할시 본교 부담이 가중되며, 사용자의 무절제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함.	제9조 (생활관비) ② 전기, 수도료 기타 관리비는 중원대학교에서 부담하되 당해 예산 범위에 초과되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학생에게 청구하여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제9조 (생활관비) ② 전기, 수도등 호실당 발생되는 공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현 생활관이 3인 1실과 2인 1실으로 운영하고 있고, 생활관비도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현 지침과는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음.	제10조 (입사) ④ 생활관 호실 배정인원은 3인 1실 기준으로 한다. 성별 인원 부재로 불가피할 경우 입실 인원을 조종할 수 있으며 생활관비 변동 사항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입사) ④ 생활관 인원 배정은 3인 1실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현지 여건상 3인이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2인 1실 또는 1인실을 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생활관비는 3인 1실과 구분하여 부과한다.	
	비행실습을 신체상의 문제로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정신적 질병으로 비행실습을 못할 시 환불할 수 있는 근거마련	제11조 (퇴사 및 중도 퇴사) ④생활관비 납부 후 신체상의 문제 등으로 비행교육이 불가로 중도 퇴실 경우 ~	제11조 (퇴사 및 환불) ④ 생활관부 납부 후 질병 등으로 비행교육이 불가로 중도 퇴사할 경우 ~	